

의안처리상황표	
의안번호	7
건명	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발의자	성북구청장
발의연월일	2026년 8월 12일
심사위원회	행정기획위원회
의결결과	2026년 9월 7일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
이송연월일	2026년 9월 8일
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	년 월 일 조례 제 호
<요지>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에서 예수하여, 향후 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.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변경.	

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
행정기획위원회

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

성 북 구
(기획예산과)

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7
----------	---

제출년월 : 2026년 8월
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변경이유

가.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
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에서 예수하여, 향후 세수 감소 등 재정
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

나.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변경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설치 개요

1)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7조

2) 설치목적 :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
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의
통합적 관리

3) 설치연도 : 2020. 12. 31.

나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1) 기금사업의 목표

○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

다.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

1) 기금변경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	변경예산	증감액
기금규모(수입·지출)	33,716,376	43,467,744	9,751,368

2)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○ 수입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33,716,376	43,467,744	9,751,368	
예치금회수	33,338,650	33,335,824	△2,826	(감)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변경
예수금수입	172,676	9,647,888	9,475,212	(증)일반회계 9,302,826천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7,092천원 주차장특별회계 155,294천원
이자수입	205,050	484,032	278,982	(증)예수금 수입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

○ 지출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33,716,376	43,467,744	9,751,368	
일반예치금	8,174,320	17,925,688	9,751,368	(증)예수금 증가에 따른 연도말 기금조성액 증가
예수금원금상환	25,542,056	25,542,056	0	

3) 2026년도말 기금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조 성 액	사 용 액	2026년말 조성액(잔액)
43,467,744	25,542,056	17,925,688
· 예치금회수 : 33,335,824 · 예수금수입 : 9,647,888 · 이 자 수 입 : 484,032	예수금원금 상환 (통합계정 → 일반회계)	2027년도 이월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